

한국스파이렉스사코(주) 구매 표준 조건 (Terms and Conditions)

제1조. 해석

(가) 본 계약상의 용어의 정의와 해석의 규칙은 아래와 같다.

“적용 법률”은 판매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을 의미한다.

“회사 혹은 구매자”란 한국 Spirax-Sarco Limited 의미한다.

“불가항력의 경우”는 아래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다.

“물품”은 판매자로부터 회사가 구매하기로 동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검사자”는 물품이나 판매자 사업장 또는 판매자의 거래처 사업장에 대한 시험이나 검사를 목적으로 구매자가 지정한 자를 의미한다

“주문서(Purchase Order)”는 물품 구매에 관한 회사의 서면 지침으로, 본 계약 조건들을 포함한다.

“판매자”란 회사의 주문을 수락하는 개인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

“설비 및 공구”란 물품의 제조에 고유하게 사용되는 모든 설비, 패턴, 공구 및 이와 유사한 품목을 의미한다.

“본 계약 또는 T&C”는 Terms and Conditions의 약어로 구매 표준 조건을 말한다.

“서면”이라 함은 문서와 이 메일을 포함한다.

“특수 조건”이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별도의 특별한 조건을 의미한다.

(나) 어떤 특정 법률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그 법률은 개정, 연장, 적용 또는 재제정(再制定)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 당시에 유효한 법률을 의미하며 법에 따라 시행 되어 같은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는 모든 부칙을 포함한다.

(다) 본 계약에 기재된 조항 별 표제는 세부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조. 계약의 형성

(가) 본 계약으로 작성된 계약서와 첨부된 주문서 및 특수 조건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구두, 서면으로 된 다른 합의 내용에 우선하며, 본 계약 내용 이외의 어떠한 진술이나 사항도 보증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과 주문서 및 특수조건 간에 불일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 순위에 의하여 해석한다.

1. 특수 조건

2. 본 계약(T&C, 구매 표준 조건)

3. 주문서(Purchase Order)

본 계약 당사자의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사기적 은폐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가 책임이 있다.

(나) 판매자가 물품을 회사에 발송 또는 배송하는 것은 판매자가 본 계약 조건을 수락한다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된다. 본 계약 조건의 변경 또는 조건의 추가는 구매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승인하지 않는 한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 본 계약 조건은 여타의 다른 조건들에 대하여 우선한다.

(라) 주문서의 수락이라 함은 본 계약 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을 의미하며, 판매자가 적용을 주장하는 다른 조건들은 본 계약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조. 가격

주문서에 기재된 가격은 확정 가격이며, 회사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은 한 어떠한 변경도 불가하다.

주문서상의 가격이 결정된 후 물품이 인도되기 이전에 판매자가 구매자와의 거래보다 더 유리한 조건과 더 낮은 가격으로 다른 고객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상호간에 이를 인정한다면 그러한 조건 또는 가격은 본 계약 하의 주

문서에 적용되며, 구매자가 구매한 모든 물품에도 적용된다. 판매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 결정이 지연될 경우 판매자의 요청이 있다면, 구매자의 내정가를 적용하여 추후 확정 단가 결정시 정산할 수 있다. 구매 가격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특별한 합의 또는 지정된 경우가 없으면, 모든 포장비, 배송비, 물류 하역비, 제반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또는 지적 재산 사용에 따른 모든 경비 등은 포함된다.

제4조. 대금

물품이 합의된 기간 내에 지정 장소에 인도되어 회사 또는 그 수권 대리인이 수락하고 올바르게 작성된 송장이 지정된 주소지에서 접수되면 회사는 대금 지급 절차를 수행한다. 대금 지급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회사의 "정기결제조건"에 따른다. 별도의 계약에 의한 변경 시에는 개별계약서(개별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에 기재한다. 회사의 "정기결제조건"은 회사의 정책 내지 사정에 의하여 때때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위 변경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매자와 사전 합의 없이 주문서상 납품 일자보다 빨리 물품이 인도되는 경우, 주문서상 납품 일자에 물품이 배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금이 지급된다. 대금을 했다고 해서 부적합 물품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회사는 주문서에 의거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여타의 권리나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는다. 대금 수령을 위해 제시하는 청구서에는 주문서 번호와 날짜, 회사의 부품 번호, 물품의 단가, 인도된 물품의 수량 및 총 가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는 청구서는 구매자가 반환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품질과 인수 거부

판매자는 본 계약의 조건으로서, (1) 판매자는 물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물품은 물품의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본 계약에 따라 이전될 때까지 판매자의 절대적인 재산이다. (2) 주문한 모든 물품은 사양 설명과 규격 및 샘플과 엄격하게 일치해야 하며, 인도 후 24개월 동안 모든 측면에서 구매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한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구매자가 이전에 승인한 표준 이상의 만족스러운 품질이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판매자의 의무는 상품이 사양 설명에 따라 구매되었는지, 판매자가 동일한 설명의 상품을 취급하는지, 물품이 특허 또는 상품명으로 지정되었는지, 구매자가 물품이나 샘플을 검사했는지, 또는 검사에 의해 결함이 명백해졌는지 등의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구매자가 품질 관련 권리를 행사하여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반환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판매자의 위험 및 비용으로 물품을 반환한다. 판매자는 제품의 형태, 적합성, 기능, 유지 보수성, 신뢰성 또는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 사항을 변경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 세부 사항을 구매자에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그러한 변경 사항의 상품 반영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구매자가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상품에 반영될 수 없다. 판매자는 본 계약 조건에 의거 공급한 물품의 사양 변경에 대한 승인서 또는 그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 납기

모든 물품은 서면으로 구매자가 별도로 합의하거나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문서에 명시된 납품 장소로 운송료 선불로 배송된다. 물품의 납기 시기는 주문서의 핵심적 사항이다. 구매자가 합의되거나 제시된 납기보다 더 빨리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러한 요구에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물품 납기가 빨라졌다고 해서 사전에 구매자가 서면으로 승인했던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가 비용이나 경비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판매자가 어떤 이유로든 납기가 지연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판매자는 즉시 이를 서면으로 구매자에 통지해야 한다. 구매자는 정기적으로 물품 인도의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지속적인 납기 지연과 부분적 납기가 계속되는 경우, 이는 판매자의 계약 위반으로서 구매자는 독자적 재량으로 기존 주문서 물품의 구매를 전량 취소하고 판매자로부터 그러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구매자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은 한 인도 물품은 정상 근무 시간에 수령한다.

판매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가) 주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

(나) 판매자가 납품을 시도하는 후속 물품의 수령을 거부한다.

(다) 판매자의 기한 내 납기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 손실 또는 경비는 판매자에게 부과하며, 여기에는 납품되지 않은 물품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합당한 비용도 포함된다.

주문서보다 더 많은 수량이 납품된 경우 판매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위험과 비용은 모두 판매자의 부담이다. 회사가 분할 납품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각 분할 납품 분은 하나의 계약으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이를 납품하지 못하면 구매자는 전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독단적 권리를 가진다. 구매자는 제시된 납품 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주문서 상의 납기 일정을 비용과 무관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납기에 영향이 있는 경우는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그에 대한 판매자의 동의에 따라 납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물품 검사와 수락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질 관리 평가(여하한 종류의 평가이든 모두 포함)를 수행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판매자의 사업장 또는 판매자 공급업체의 사업장에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검사자를 파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검사자 파견 시 판매자는 구매자가 본 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원, 지원, 장비 및 시설을 검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위 품질 관리 평가의 결과 물품이 주문서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한 사양 또는 디자인과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매자는 이를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판매자는 즉시 적합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매자는 추가적인 시험과 입회 검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 품질 관리 평가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물품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시험과 검사를 시행했다고 해서 주문서와 관련한 판매자의 의무는 경감되거나 영향 받지 않는다. 주문서와 관련한 판매자의 의무(특히, 물품이 적절한 상태에서 발송되도록 확인하는 의무)와 함께, 구매자는 주문서에 기재된 물품을 언제라도 판매자 또는 본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판매자가 지정한 공급 업체의 사업장에서 검사할 수 있다. 구매자가 물품 수령 후 검사 전 영업일 7일이 경과 되기까지는 물품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물품의 잠재적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구매자는 물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구매자의 요구 사항에 맞게 물품이 개발, 수정, 개선 또는 변경된 경우 본 계약 당사자는 수락 시험 및 수락 기준에 동의한다(별도의 시험 기준). 인도된 물품이 그러한 해당 수락 기준을 충족시키면 구매자는 물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매자에게 납품되는 발주 품목에 대한 합, 부 판정은 구매자의 입고 검사 업무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수락이 거부된 물품은, (1) 판매자가 구매자와 합의한 날 혹은 구매자가 지정한 날짜를 경과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판매자의 비용으로 회수하며, (2) 구매자의 재량에 따라 관련 비용을 청구하거나, 판매자의 비용 부담으로 판매자가 신속히 교체할 수 있으며, 본 조항에 따른 교체 물품은 원래의 주문서상 동일 구매 물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판매자가 합의한 날짜 혹은 구매자가 지정한 날짜까지 물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독단적 재량으로 물품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수익금을 사용하여 처분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구매자가 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판매자는, (1) 구매자의 거부 통지를 수령했음을 즉시 구매자에게 확인하고, (2) 이 확인과 동시에, 초기 시정 방안을 회사에 통지하며, (3) 구매자의 거부 통지로부터 3일 이내에 구매자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판매자의 시정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구매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제7조에 의한 구매자의 권리가 포기 또는 제한된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제8조. 포장 및 관련 문서

물품은 구매자가 지정한 납품 장소에 물품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하여 추가 비용 발생 없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판매자는 물품이 구매자에게 순조롭게 인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서류를 완전하게 구비하여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업자에게 적절히 제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연이나 부정확한

관련 문서로 인해 구매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전액 판매자에게 부과되며 판매자는 이러한 비용에 대해 구매자가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을 지불한다. 판매자는 매 물품 인도 시 일련 번호, 특히 주문서 번호와, 단위 포장물의 수량, 구매자의 부품 번호, 납품되는 물품명 및 수량을 포함하는 내용의 거래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9조. 물품 소유권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납품 시 또는 대금 지급(부분적 지급 포함)시에 구매자로 이전된다. 물품의 분실, 손상 또는 도난의 위험은 구매자가 지정한 인도 장소로 물품이 납품되어 회사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수락되었을 때 구매자로 이전된다.

제10조. 재 하청 금지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과 모든 주문서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하도급을 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지적재산권과 배상

판매자의 비독점적 지적재산권은 구매자의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복사, 공개, 공유할 수 있으며 본 계약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범위까지의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며, 그 권리를 제한 없이 부여한다. 판매자는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그러한 지적재산권을 구매자에게 부여할 권리와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

구매자가 제공한 도면, 사양 및 데이터 또는 판매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매자의 경비 부담으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판매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자로 하여금 준비 또는 취득하게 한 기타 품목의 특허,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은 구매자의 독점적인 재산으로서, 구매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위험 부담으로 반환해야 하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를 처분, 사용 또는 공개할 수 없다. 더 명확히 하면, 판매자의 주문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한 모든 품목의 지적 재산권은 구매자가 보유한다.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생성된 새로운 지적재산권은 구매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이러한 신규 지적재산권이 소프트웨어, 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형태가 있는 인도물인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이의 전체 인도물을 무상으로 구매자에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는 본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이 보장되는 모든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해야 하고, 이는 구매자에게 절대적으로 귀속되며, 판매자는 그러한 양도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추가 서류들을 제공한다. 판매자는 물품이나 주문서의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제조, 공급 또는 재판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기타 지적재산권 또는 국내외에서의 소유권 등의 침해 또는 침해 혐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클레임, 법적 조치 또는 소송으로 인해 야기된 모든 책임, 손실 또는 경비(여기에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 이익이나 명성의 상실과 모든 이자, 벌금과 법무 비용이 포함된다)에 대하여 구매자와 그 임직원 및 대리인, 계열회사와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이 면책되도록 보호해야 한다. 본 제11조의 규정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여하한 내용으로 다른 계약서에서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서보다 우선한다.

제12조. 손해와 손해

(가) 구매자의 고객, 직원, 대리점 또는 제3자에게 납품된 물품의 재료, 제조 기술 또는 품질이나 디자인 상의 결함으로 인하여(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해당) 발생한 부상, 손해,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또는 판매자의 본 계약 불이행 또는 태만으로 인해 그러한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판매자는 그러한 클레임에 대한 대응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 조연이나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클레임에 대해 보상 조치가 취해지거나 클레임이 해결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그러한 클레임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이로 인한 손해, 손실(수익의 손실이나 기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적 손실로서 사용이나 생산을 못하게 되는 상황, 사업 또는 사업 기회의 상실 및 매출의 손실 등을 포함한다), 경비 또는 비용에 대하여 구매자의 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배상해야 한다.

(나) 상기 (가)항에 언급된 클레임이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경우, 판매자는 이를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하고, 구매자는 구매 계약에 합당하며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사안의 처리 권한을 인수받아 판매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동 사안을 처리 또는 해결할 전적인 권한을 보유한다.

제13조. 의무 불이행

다음과 같은 경우, 구매자는 서면 통지로서 어떤 계약의 전부 또는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구매자의 다른 권리는 침해 되지 않는다)

(가) 판매자가 본 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위반을 계속하고, 이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나) 판매자의 집행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

(다) 판매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대신할 책임자가 없는 경우.

(라) 판매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판매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마) 판매자가 자신의 사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바) 판매자가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 판매자가 본 제13조에서 언급된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사건으로 다른 사법권 내에서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

어떤 계약이 여하한 이유로든 해지되는 경우, 해지되었다고 해서 해지 이전에 당사자들에게 주어 졌던 권리와 의무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해지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조건은 해지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어떤 계약이 구매자에 의하여 해지되는 경우, 판매자는 이에 협조하고 구매자가 판매자를 다른 계약자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관련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한다.

제14조. 재산권

구매자가 제공한 자재, 장비, 금형, 몰드, 패턴(형식), 디자인 및 공구 설비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공급한 기타 품목이나 판매자의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구매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고 판매자로 하여금 준비 또는 획득하게 한 품목은 모두 구매자의 독점적인 재산이며, 이들은 "Spirax-Sarco Limited의 재산"으로 표시되고, 판매자는 이들을 양호한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구매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위험 부담으로 이를 반환해야 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들을 처분, 사용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품목들이 판매자의 보관, 관리 하에 있는 기간 동안 판매자는 구매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에 동의한다. 주문서에 의하여 구매자 재산의 일부에 대한 기계 가공, 또는 가공 처리 작업 요청 시 판매자의 보관, 관리 하에 있던 자재나 부품이 파괴 또는 손상되어 원래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판매자는 여하한 경우여라도 구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제14조에서 언급된 품목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물품을 구매자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다른 제3자에게 이들의 사용을 허가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불가항력

천재지변(홍수, 지진, 태풍, 전염병 또는 기타 자연 재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이나 이에 관련된 심각한 위협(적대 공격, 봉쇄, 출입 금지, 폭동 또는 반란 포함), 또는 정부의 명령이나 규제(수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 포함), 또는 본 계약 당사자들이 합당하게 통제할 수 없는 유사한 상황("불가항력적 상황")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는 본 계약 조건 또는 주문서의 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나, 다만 이는 이러한 상황으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본 제15조의 여타(나머지)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혼선을 피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파업, 직장 폐쇄, 노동력 부족이나 원자재, 연료의 획득이 불가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공급 업체가 없는 경우나 기타 산업 분야의 장애 등은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한 당사자는 다음 사항들을 전제 조건으로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한다.

(가) 자신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을 야기시킨 불가항력적 상황의 성격과 범위를 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하고,

(나) 불가항력 상황 이전에 자신에게 알려진 모든 문제를 유념하여 합당하게 취했어야 했던 예방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가항력 상황에 의한 파급 효과를 피할 수 없었으며,

(다)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본 계약 조건의 이행을 위해, 그리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일 내 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불가항력 상황에 의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불가항력적 상황이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당사자 중 누구든지 14일 전 사전 서면 통지로 본 계약 조건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통지 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은 해지된다. 이러한 해지로 인하여 해지 이전에 발생했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제16조. 비밀 유지

판매자는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판매자에게 공개한 비밀 성격의 기술적 또는 상업적 노하우, 사양, 발명, 프로세스 또는 계획 등과 판매자가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제품에 관련된 기타의 비밀 정보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구매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발행한 모든 도면,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서면 자료를 판매자가 작성한 모든 사본과 함께 구매자에 반환해야 한다. 본 계약 조건의 어떠한 내용도 판매자의 본 계약 이행이라는 제한된 목적을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또는 여타의 방법으로 비밀 정보에 관한 권리가 허락되거나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본 계약 체결 전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별도의 비밀 준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비밀 준수 협약이 본 조항보다 우선한다.

제17조. 구제책

본 계약 조건대로 물품이 인도되지 않거나 판매자가 본 계약 조건의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구매자가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 또는 구제책을 침해 받지 않으며 물품 일부의 수락 여부와 관계 없이 구매자의 재량으로 다음과 같은 구제책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가) 주문서의 철회.

(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고, 판매자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거부 물품을 반환한다. 이 때 반환된 물품에 대한 대금 전액을 즉시 환불해야 한다.

(다)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물품의 결함을 수리, 대체 물품 공급 또는 주문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타의 작업 기회를 판매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라) 판매자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없이 후속 물품에 대한 수락을 거절할 수 있다.

(마) 구매자가 제17조 (다)항의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 또는 제3자가 판매자의 비용 부담으로 물품이 주문서와 일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바) 구매자는 판매자의 본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해 지속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안전과 보건

판매자는 판매 물품의 설계, 제조, 수입, 건설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 하의 물품과 관련하여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에 대하여 구매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업장 또는 판매자의 공급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혹은 부정기적인 안전과 보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매자의 지적 및 개선 요구에 따라 판매자는 안전한 작업장 유지를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 뇌물 수수 관련 법률 준수

판매자는 판매자와 그 자회사나 계열회사 및 판매자를 대리하는 누구도(판매자의 이사,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하며, 통합적으로 "대표자들"이라 한다), 사업이나 사무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위해 또는 어떤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청탁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직접적 또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을 통하여, 제공, 약속, 증여, 수취 또는 수령을 합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향후에도 제공, 약속, 증여, 수취 또는 수령을 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의 지급, 선물, 약속 또는 이득의 취득은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제품 구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적절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는 내용의 장부, 계정 및 기록을 유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최소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제조물 책임

판매자는 구매자가 발주한 물품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각 호의 사항 등을 최선을 다하여 준수해야 한다.

(가) 판매자는 발주품목을 원래의 설계의도나 제조 방법대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야 한다.

(나) 판매자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설계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설계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판매자는 현재의 기술수준이 부족할 경우와 사용자의 부주의, 오 사용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설명, 지원,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판매자가 이를 직접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판매자는 발주 품목을 공급한 후에도 그 발주 품목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교체,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판매자는 발주 품목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구매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구매자의 부주의로 인한 결함은 구매자가 책임진다.

(마) 상기의 규정에 의한 청구 및 소송 등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경비를 지불한 경우 구매자는 그 비용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즉시 구매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일정의 보험금액 이상 제조물 책임 보험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구매자와 판매자는 제조물 책임의 예상 및 실제 사고 발생시 대책수립에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제21조. 일반 사항

본 계약 조건에 따른 회사의 권리 또는 구제책은 본 계약 조건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여타의 권리 또는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는다. 만일 법원 또는 관할 행정기관이 본 계약 조건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적법하지 않거나, 실효의 소지가 있거나, 시행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정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분리 가능하다고 간주하여, 이 부분을 제외한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구매자가 본 계약 조건의 어떤 규정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한다고 해서 본 계약 조건 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본 계약 조건의 어느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구매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 후속적으로 발생한 판매자의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해서도 회사가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본 계약 조건의 여타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계약 조건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 또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일반 상 관례 또는 상호협약에 의하여 해결한다. 하지만, 상호간에 법률상의 분쟁 발생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